「평창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○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4일, 평창군수 제출

○ 회부일자: 2026년 9월 14일 회부

○ 상정일자: 제31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9월 14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환경과장)

가. 제안이유

❍ 우리 군은 연간 약 1,500가구(3,000명) 내외의 전입이 발생하고 있으며, 전입 전에 구입한 타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임.

❍ 이에 전입자에게 타 시・군・구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고,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「전입자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스티커 제도」를 시행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❍ 전입자 대상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 배부 조항 신설: 안 제5조제5항

-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, 가구당 인증스티커 최대 20장 배부
- 인증스티커 부착 후 타 지역 종량제봉투 사용·배출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전입자가 전입 전에 타 지역에서 구입하여 보유하고 있던 쓰레기 종량제봉투를 평창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스티커 제도를 도입하여 전입자의 생활상 불편을 해소하고, 사용 가능한 종량제봉투의 불필요한 폐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, 제도의 도입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군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·면사무소에서 1가구당 20장까지 인증스티커를 배부할 수 있도록 하고,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타 지역 종량제봉투를 배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의 적용 대상과 기간 및 배부 수량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보임.

❍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전입자의 생활편의를 높이고 자원의 불필요한

폐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이 타당하며,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 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